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이규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896 |
|----------|-----|

발의연월일 : 2004. 11. 18.

발 의 자 : 이규택 · 이재오 · 엄호성
이경재 · 이인기 · 정병국
박찬숙 · 류근찬 · 박순자
고진화 · 이군현 · 허 천
정화원 · 진수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한글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하나임. 오늘날 세계 각국의 문화와 언어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변화 속에서 점차 한글에 대한 의식 내지 관념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창적인 민족문화인 한글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글날을 국가경축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慶日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경일) 국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이 경우 기념행사는 영릉(세종대왕릉)에서 거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第2條 國慶日是左와같다.</p> <p><u>3·1節 3月 1日</u></p> <p><u>制憲節 7月17日</u></p> <p><u>光復節 8月15日</u></p> <p><u>開天節 10月 3日</u></p> | <p>제2조(국경일) 국경일은 다음 각호 와 같다.</p> <p>1. <u>3·1절 3월 1일</u></p> <p>2. <u>제헌절 7월 17일</u></p> <p>3. <u>광복절 8월 15일</u></p> <p>4. <u>개천절 10월 3일</u></p> <p>5. <u>한글날 10월 9일. 이 경우</u> <u>기념행사는 영릉(세종대왕릉)</u> <u>에서 거행한다.</u></p> |